

1.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환자 상태 확인
및 초기대응

- ① 재해 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③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즉시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발생 전파
- ④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⑤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2단계]

산업재해 발생 보고

- ①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 작성 및 제출
- ②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즉시 보고
- ③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건설사고 발생 신고 →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 건설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국토교통부에 신고 내용이 전달

[3단계]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 ①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
- ② 재해요인의 파악 및 도출
- ③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 근본적 문제점과 재해 요인을 근거로 구체적 계획 수립
- ④ 후속조치: 수시위험성평가 및 수시근골격계유해 요인 조사

1) [1단계] 환자 상태 확인 및 초기대응

◎ 초기대응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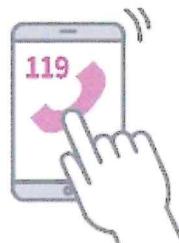
[대응 지침]

-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사고 발생 인지 사고발생을 인지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발생을 전파하고 응급처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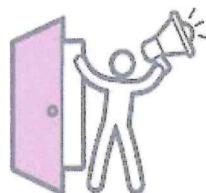
사고발생 신고 119 및 학교에 즉시 사고를 신고한다.



현장 초동대응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고확대방지 조치를 한 후 필요시 소방서, 인근병원, 고용노동부와 같은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나무, 플라스틱)로 사고자를 떼어낸다.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한다.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며,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한다.

기계 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한다.

**유해물질
누출** 신속히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인화성·
산화성 물질
누출** 점화 원인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하지 않는다.

119 신고 매뉴얼

①

119 신고 구체적으로 주소, 건물 등을 설명하여 부상자의 위치를 알린다.

②

경위 설명 사건이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와 부상자의 수, 다친 정도를 설명한다.

③

응급조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를 통해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듣고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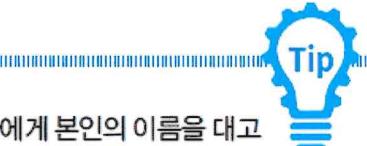
④

상황종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 대원에게 응급처치 등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인계한다.



* 재해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 처치자는 반드시 재해자에게 본인의 이름을 대고 응급 처치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

사전동의



VI.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재해상황		응급처치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다. 옷이나 양말은 벗기지 말고 그 위에 물을 끼얹어 냉각시킨다. 수포가 생긴 경우 터뜨리지 말고 환부를 충분히 냉각시키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로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골절 (추락, 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환자가 있는 곳이 위험한 위치가 아닌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친 부위의 위와 아래 관절을 모두 포함하여 부목을 활용하여 고정한다. 목뼈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의 머리를 고정해 주며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출혈 (협착, 베임, 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하면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하고 쇼크 증상 관찰 및 예방 조치를 취한다. 출혈 시 상처 부위를 눌러 압박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린다. 유리나 철 조각 등이 박혀 있는 경우 무리하게 빼서는 안된다. 절단물이 있을 경우 생리식염수로 씻어 거즈로 싸고, 또 비닐로 두 겹 짠 후 얼음이 담긴 물통에 넣어 전문병원으로 보낸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에 베인 경우에는 소독 후에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추가 치료를 받는다.
기도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임리히법: 기도가 막혔을 경우 환자 등 뒤에 팔을 벌리고 서서 두 손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놓고 주먹을 감싸 쥐어 밀어 올린다.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찾거나 구토를 하게 하려고 하면 안된다.
심폐 소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폐소생은 심장의 긴박한 상황으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춘 경우에 사용하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전문가와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쓰러진 사람의 상황을 파악 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흉부 압박을 멈추지 말고 주변에 제세동기가 있으면 사용하도록 한다.

◎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초기대응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기계·기구별 비상정비, 전원차단 등에 대한 방법 등을 활용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명시
- 도급인은 작업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 체제 운영과 대피 방법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 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작업중지권의 행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를 보장하고,
 - * 근로자 범위에 종사자(도급·용역·위탁 받은 자의 근로자 포함)의 작업 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됨
 -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5. 참고자료 활용 및 안내
- 근로자로부터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함

구 분	업무 내용
① 상황 전파 및 작업중지	○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작업중지
② 초기대응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필요 시 2차 피해요인 위험요인 제거)
③ 긴급대피	○ 비상대피장소 긴급 대피
④ 신고 및 보고	○ 재해 발견자·관리감독자 등이 119신고 및 즉시보고
⑤ 현장 보존	○ 소방서, 산재예방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 보전 지휘 협조

VI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실시

구 분	업무 내용
① 신속한 연락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견자는 피해 상황 파악 • 응급조치(전원차단, 기계정지 등) • 119신고 및 비상연락체계 전파
② 현장 응급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시행 등 <p style="color: blue;">1. 단계별 조치 사항 ◎상황별 응급조치 요령 참고, 244쪽)</p>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 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및 원인 분석
- 아울러 작업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 되어야 함